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현황

2024. 5.



교 육 부

차 례

I. 추진배경	1
II. 추진경과	1
III.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주요내용	2
IV.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현황	3
1.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 제고	3
2.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5
3. 피해교원을 두텁게 보호	7
4.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8
5.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한 원스톱 지원	9
V. 향후 추진과제	10
[붙임1] 한눈에 보는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현황	13
[붙임2]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육감 의견 제출 사례	14
[붙임3]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안내	16

I. 추진배경

□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의 현장 안착에 중차대한 시기

- 교권 추락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던 지난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교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및 5법* 개정 완료
-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23.9.), 「아동학대처벌법」(‘23.12.)
- 「교원지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3.28.~)에 따라 신학기부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가 학교 현장에 도입·적용 중

□ 현장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협력·노력 유도

-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추진현황 점검으로, 후속 조치의 현장 안착 지원 및 현장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로 변화된 모습과 추진현황에 대한 대국민 안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 사회적 협력·노력 유도

II. 추진경과

-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발표(‘23.8.23.)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발표(‘23.8.17.) 및 시행(‘23.9.1.~)
-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23.9.27.)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3.12.26.)
- ‘학교 민원응대 안내자료’ 배포(‘24.2.27.)
-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24.3.~)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배포(‘24.3.22.)
-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시행(‘24.3.28.)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24.3.28.~) 및 안내자료 배포(‘24.2.27.)
-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배포(‘24.4.19.)

Ⅲ.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주요내용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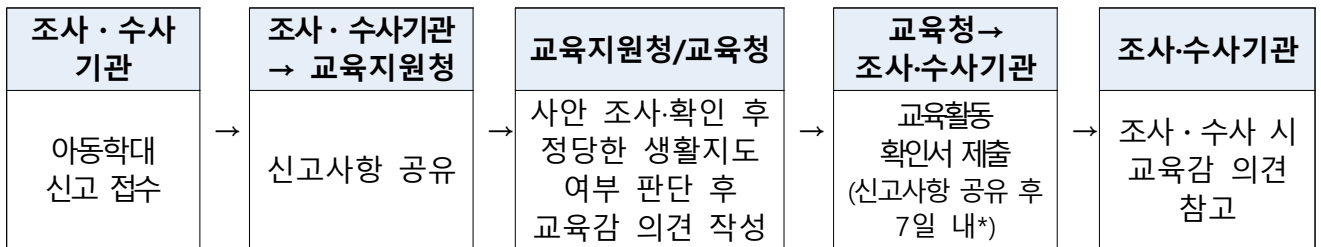
	기존	개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관할청 지원 부재 및 해당 교원 직위해제 처분	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②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교육활동 침해를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로 인식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불안정	① 교육활동 침해 은폐·축소 금지 ② 교권보호위원회 이관(학교→ 교육지원청) 및 개최 요건 완화*로,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 대응 * (기존) 학교장 요청 시 → (개선) 피해 교원 요청 시 또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에도 개최 가능 ③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신설 등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운영(수업 방해 학생 분리지도 가능)
피해 교원을 두텁게 보호	일부 교육청 민간보험 가입	① 상향 표준화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중 ②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통한 심리·법률 상담 지원 확대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개인이 민원에 응대 악성민원 대응 체계 미흡	①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 ② 민원응대체계 구축 및 여건 조성 - 기관 차원의 민원응대를 위한 민원 대응팀 구성·운영 - 통화 녹음 전화기 설치, 통화연결음 설정, 민원상담실 지정·마련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	전국 공통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 상담 시스템 부재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법률 상담 연계 등을 원스톱 지원

IV.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현황

1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 제고

-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무고의 죄’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 추가
 -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 의무 부여
- *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배포('24.4.)
 ※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없도록 「교원지위법」 개정

< 의견 제출 흐름도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7개월('23.9.25.~'24.4.30.) 동안 385건 제출, 이 중 281건(73%)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 제출

<교육감 의견 제출 관련 현황('23.9.25.~'24.4.30.)>

(단위: 건)

구분	교육감 의견 제출				수사검사 결정 현황							총계
					진행 중	종결(148건)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 없음	기타	총계		수사개시 전 종결 (불입건 등)	검사결정 종결			소계		
							불기소	아동보호 사건 처리	기소		기타	
간수	281 (73%)	84 (21.8%)	20 (5.2%)	385 (100%)	237	32 (21.6%)	80 (54.1%)	14 (9.5%)	15 (10.1%)	7 (4.7%)	148 (100%)	385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95건(86.3%)은 ‘혐의없음’(불입건, 불기소) 종결, 3건(2.7%)만 ‘기소’ 처분
- ⇒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281건)에 대한 수사·검사결정 결과>

(단위: 건)

구분	진행 중	종결 내역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불입건 등)	검사 결정 종결 내역				소계
			불기소	아동보호사건 처리	기소	기타 (기소 중지 등)	
건수	171	26 (23.6%)	69 (62.7%)	8 (7.3%)	3 (2.7%)	4 (3.6%)	110 (100%)

< 대표 사례 >

- (사례1)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중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팔을 잡았고 이에 '신체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함
 - (교육청→ 수사기관)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출 ⇨ (수사기관) 교육감 의견 참고하여 수사 후 '혐의없음 송치' ⇨ (검사) 교육감 의견 참고하여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 (사례2) 담배 피우는 학생 대상 생활지도를 한 교사를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
 - (교육청→ 수사기관)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출 ⇨ (수사기관) 교육감 의견 참고하여 수사 후 '혐의없음 송치' ⇨ (검사) 교육감 의견 참고하여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 (과년도 대비 현황) 보건복지부 통계와 비교 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감소로 전망되며, 기소·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감소

* ('22.1.1.~'22.12.31.) 유·초·중·고 교직원 아동학대 사례 수: 1,702건(보건복지부) vs. ('23.9.25.~'24.4.30.) 교육감 의견 제출 건수: 385건

※ 교육청으로부터 수합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의견 제출 건수는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목적(예: 아동보호, 처벌) 및 대상이 다른 아동학대 관련 통계와 상이할 수 있음

- ①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②교육활동 침해유형에 '무고의 죄' 신설, ③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영향으로 추정
- '22년 대비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 아동보호사건 처리 및 기소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

<종결된 아동학대 수사 건에 대한 검사결정 결과>

(단위: 건)

구분	불기소	아동보호 사건 처리	기소	기타	계
2022년	257 (59.2%)	113 (26.0%)	64 (14.7%)	-	434
2023.9.25. ~ 2024.4.30.	80 (69%)	14 (12.1%)	15 (12.9%)	7 (6%)	116
비율증감	17% 증가	53% 감소	12% 감소		

2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 (은폐·축소 방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장은 교원의 치유·회복을 지원하고, 관할청에 침해 행위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 개선
 - ※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을 축소·은폐 시, 「교원지위법」제27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해야 함
- (사회적 공론화) 교육활동 침해를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는 시각 확산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증가 추세
 - ※ 교보위 개최 건수: ('20) 1,197건→ ('21) 2,269건→ ('22) 3,035건→ ('23) 5,050건
- 교육활동 침해를 공론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교육활동 침해 시 교사의 대응('22. 한국교총 조사결과)>



- (교보위 이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3.28.) 심의의 전문성 강화 및 피해교원 보호 확대
 - ※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안내 자료' 배포('24.2.27.)
- (교보위 개최 요건 완화) 학교장 외에도 피해교원 요청 또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 의무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토록 개선
 - 교보위 이관 후 한달 동안(3.28.~4.30.) 286건의 교보위 개최, '23년 대비 '24년 교보위 개최 건수는 유사할 전망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건)

구분	교보위 이관 후 1개월('24.3.28.~4.30.) 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2023학년도('23.3.1.~'24.2.29.)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교육활동 침해 인정	교육활동 침해 아님	총계	교육활동 침해 인정	교육활동 침해 아님	총계
건수	265	21	286	4,953	97	5,050

1개월간 평균 420건 개최

※ 진행 중인 사안 등은 제외

- (조치 강화)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신설*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특별교육 확대**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교원지위법」 개정: (前) 침해 학생 전학 조치 시 학부모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화
→ (後) 침해학생 출석정지, 학급교체 시에도 학부모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화

- (엄정 대응)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 대상 '조치(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 비율 증가 및 관할청의 고소·고발 확대*

*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관할청 고발 건수: ('22) 4건 → ('23) 11건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비율: ('23) 33% → ('24) 79%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기간	2023.3.1.~2024.2.28.				2024.3.28.~4.30.				
조치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조치 없음	기타	총계	서면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 없음	기타	합계
건수	117 (33%)	174 (49%)	63 (18%)	354 (100%)	11 (57.9%)	4 (21.1%)	2* (10.5%)	2 (10.5%)	19

* 신원 미상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처분 불가

-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피해교원의 동의없이도 관할청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24년 관할청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고소·고발 건수: 8건

< 대표 사례 >

- (사례1) 자녀의 ○○ 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등 무더기 민원 제기
⇒ <A 교육청> 악의적인 민원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를 고발('23.11.28.)
- (사례2) 수업 방해 학생에게 경고(레드카드)를 부여한 교사 대상 학부모가 3년간 20여건의 민원·소송을 제기
⇒ <B 교육청> 3년간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고발('24.4.18.)

- (학생 분리·지도)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지난해 연말까지(~23.12)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를 위한 장소·인력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안내('23.9.)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통해 학칙 예시안 제공 완료('23.9.27.)
 - 분리 장소·인력 지원 방안 마련 및 예산(예: 학교운영비 등) 편성을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여, 시도교육청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원 중
※ 부감회의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장소·인력 마련 및 예산확보 요청('23.11.7., '24.1.16.)
- <시도교육청 지원 사례>**

 -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지도에 참여하는 **교원 대상 분리 지도비** 지급(부산, 광주, 대전, 경기 등)
 - 퇴직 교사 등 보조 인력(자원봉사자) **활용**(경남 등)
 - **민원상담실, 상담실, 교무실** 등의 장소를 분리 공간으로 지정·운영
- 올해 1학기부터 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우수사례 발굴(~'24.8.)·확산('24.9.~) 예정

3 피해교원을 두텁게 보호

-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개발·안내('24.2.) 및 17개 시도교육청 계약 완료(~'24.4.)로, 교원 대상으로 보다 두터운 분쟁조정·소송 등 지원
※ (최소 보장범위) ①신설 분쟁·조정 ②강화 민형사 소송지원(심급별 660만원 등) ③강화 배상 책임(1사고 2억원내) ④강화 치료요양(200만원내) ⑤신설 위협대처 서비스(20일내) 등
-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한 상담·예방교육 강화
* 센터 수: ('23) 25개 → ('24) 32개(시·도당 1개 이상)
상주인력: ('23) 131명 → ('24) 187명(비상주 상담, 변호사 인력 1,376명)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활성화로 '22학년도 대비 '23학년도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인원 및 건수 3배 증가

<2022-2023학년도 교육활동 보호센터 이용 현황>

이용 인원(명)				이용 건수(회)			
유형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증감	유형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증감
상담	4,363	14,496	10,133(3.3배 ↑)	상담	9,636	34,066	24,430(3.5배 ↑)
심리치료	500	2,407	1,907(4.8배 ↑)	심리치료	1,005	7,502	6,497(7.5배 ↑)
법률상담	1,623	3,607	1,984(2.2배 ↑)	법률상담	1,605	4,210	2,605(2.6배 ↑)
예방교육	9,678	53,640	43,962(5.5배 ↑)	예방교육	2,025	22,831	20,806(11.3배 ↑)
기타	11,869	11,778	△91	기타	11,037	7,969	△3,068
합계	28,033	85,928	57,895(3.1배 ↑)	합계	25,308	76,578	51,270(3배 ↑)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이 '22년 대비 '23년 2.7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24년에도 지원 확대 추세 유지

※ ('22년) 97억 → ('23년) 260억 → ('24년) 80억(특별교부금), 430억(보통교부금)

<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우수사례 >

- (부산) 퇴직교원 3명, 외부 위촉변호사 51명 등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희망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 지원 제공
- (인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실'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강화
- (대전) 전국 최초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맞춤형 원스톱 심리상담·코칭 제공

4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매뉴얼) 민원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제작·배포('24.2.)로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적극 보호

※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안내 완료('24.4.)

- (민원대응체계) 개인이 아닌 기관 단위 민원 대응을 위해 민원 대응팀 구성·운영하고, 통화연결음 설정 등 민원 응대 여건 조성

-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통합민원팀(195개)을 운영 중이며, 유(공립)·초·중·고의 98.9%(13,952교)가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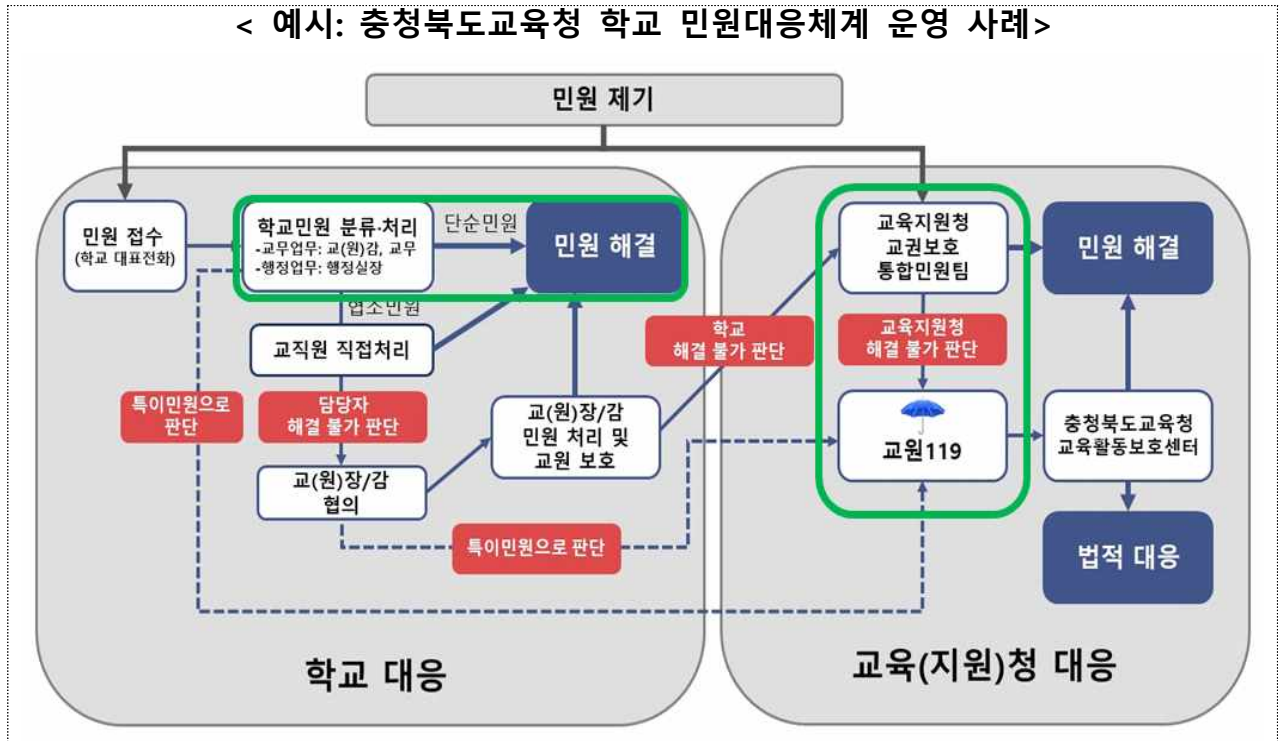
-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95%) 및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설정(88.6%)을 지원하고, 민원상담실 지정·운영(89.1%)으로 학교 민원대응체계 강화

<17개 시도교육청 학교민원응대 여건 조성 현황>

구분	학교별 민원대응팀	통화녹음 전화기	통화연결음	민원상담실	교육(지원)청별 통합민원팀
조치 완료 정도	98.9% (13,952교)	95.4% (13,456교)	88.6% (12,491교)	89.1% (12,563교)	100% (195개)

※ 전국 모든 학교에 학교 민원응대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예정

< 예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민원대응체계 운영 사례 >



5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한 원스톱 지원

- (개요) '24.3.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운영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법률 지원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 ※ 평일 09:00~18:00 운영, SNS를 통한 상담은 상시 가능
- 희망교원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를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및 시·도별 교육활동 보호센터와 연계*한 심리·법률상담 지원
 - * (3, 4월) 시도별 교육(지원)청과의 연계를 희망한 95건 연계 完(100%)
- (상담 현황) 3~4월 동안 총 501건(3월 231건, 4월 270건) 인입
 - (유형) 교육활동 침해 신고·대응 관련 상담 91건, 아동학대 신고 대응 관련 상담 4건, 단순문의 223건, 기타* 183건 순
 - * 교육활동 침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한 상담(예: 갑질 신고, 교직원 간 갈등 조정)

<교육활동 침해 1395 운영 현황(문의 유형별)>

구분	교육활동 침해 신고 관련 상담	아동학대 신고 대응 문의	단순 문의	기타	합계
3월	36(15.6%)	2(0.8%)	79(34.2%)	114(49.4%)	231(100%)
4월	55(20.4%)	2(0.7%)	144(53.3%)	69(25.6%)	270(100%)
합계	91(18.2%)	4(0.8%)	223(44.5%)	183(36.5%)	501(100%)

- (학교급) 미상*(274건), 중등(116건), 초등(87건), 유치원(15건), 특수(9건) 순

* 개인정보를 밝히기를 희망하지 않는 교원

<교육활동 침해 1395 운영 현황(학교급별)>

구분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미상	합계
3월	5(2.2%)	17(7.3%)	49(21.2%)	6(2.6%)	154(66.7%)	231(100%)
4월	10(3.7%)	70(26%)	67(24.8%)	3(1.1%)	120(44.4%)	270(100%)
합계	15(3%)	87(17.4%)	116(23.1%)	9(1.8%)	274(54.7%)	501(100%)

- (만족도) 교원들은 1395를 통한 상담에 매우 만족(5점/5점 척도)

※ (기간) 5.1.~20./ (대상) 1395를 이용한 교원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27명 / (만족도) 1) 신속성: 5점 2) 친절성: 5점, 3) 정확성: 5점

-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1395를 통한 상담이 도움이 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서비스가 지속되기를 희망

< 1395 이용 소감 >

- (교사A) "정말 힘들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 (교사B) "이런 제도가 생겨서 좋습니다. 꾸준히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사C)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 (교사D) "교권침해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잘 몰라서 연락드렸는데 친절히 안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교사E)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IV. 향후 추진과제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 홍보 활성화,
현장 소통을 통한 새로운 과제 발굴로 현장 체감도 개선**

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 제고

- (관계기관 협업) 복지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시·도 업무 담당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연중)
- (의견 제출 제도)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운영 현황 및 효과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현장 안착 지원

②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 (대응 역량 강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콘텐츠(8종)*를 개발·보급하고, 홍보자료 배포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 후속 조치 홍보 활성화(연중)

* (예방교육 콘텐츠) 교원 1종, 학생 4종(유, 초, 중, 고), 학부모 3종(유, 초, 중·고)

<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홍보계획(안)>

- 교육부 블로그, 함께학교 플랫폼, 시·도교육청 게시판 등에 카드 뉴스 탑재(5월말)
- '교육활동 보호'을 주제로 한 필통톡 촬영·유튜브 탑재(6월 중순)
-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주제로 한 포럼, 세미나 참석(요청 시) 및 개최(미정)
- 새로운 과제 발굴 등을 위한 현장교원 TF 운영(계속)
- 교육활동 보호센터 성과공유회 개최(12월말)

- (교보위 운영) 시·도담당자 중심의 협의체(공동관리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시·도의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및 현장 안착 지원

※ (현재) 월 1회 시·도 담당자 협의회 운영 중이며, 소통망을 통한 상시 소통 중

- (학생 분리·지도) 현장 우수사례 발굴·확산(~'24.9.) 및 수업 방해 학생 분리·지도를 위한 예산·인력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업 지속(연중)

※ 민원상담실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여건 조성 지속 지원 예정

③ 피해교원 대상 두터운 보호 제공

- (심리상담)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및 상담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 운영(~'24.10.)

- (교원배상책임보험) 17개 시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지원('24.하)

④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민원응대) 민원대응팀의 역할 및 민원 응대 방법 등에 대한 연수 자료 제작·배포('24.8.)로, 민원대응팀의 현장 안착 지원(연중)

※ 민원 접수처리, 온라인 상담 예약 등을 위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개발(~'24.하)

※ '민원대응체계' 구축·운영을 주제로 현장교원 TF 등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24.6.)

- (여건 조성) 보호장비 구비 등 학교별 '민원상담실' 구축 지원(~'25.)

⑤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한 원스톱 지원

- (1395 운영) 전국 모든 학교에 1395 스티커 배부 등을 통한 접근성 강화(‘24.5.)
- (역량강화) 양질의 상담 제공을 위해 1395 상담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시·도교육청과의 체계적 연계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연중)

⑥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사회적 협력 유도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

- (학부모교육)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플랫폼(‘학부모 ON누리’) 등을 통해 카드 뉴스 및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의 이해도 제고
- (‘함께학교’ 캠페인) 학생·교원·학부모가 최선의 학생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실시

	제도		현황
	기존	개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관할청의 지원 미흡 및 해당 교원 직위해제 처분	→ -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 감소 전망 -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에 대한 기소·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 감소 ※ (기소) 12%↓, (아동보호사건 처리) 53%↓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교육활동 침해를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로 인식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불안정	→ - 교육활동 침해 은폐축소 금지 -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개최 요건 완화* * 피해 교원 요청 또는 침해 신고 시 반드시 개최 - 침해 보호자 등에 엄정 대응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운영	→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비율 증가 ※ ('23) 33% → ('24) 79%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 건수 증가 ※ ('22) 3건 → ('23) 11건 → ('24 현재) 8건 - 수업방해학생 분리·지도 가능
피해 교원 두텁게 보호	일부 교육청 민간보험 가입	→ - 상향 표준화된 공통 표준약관 마련 -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한 심리, 법률 지원 확대	→ - 17개 시·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중 ※ (최소 보장범위) ①신설분쟁조정 ②강화민형사 소송지원(심급별 660만원 등) ③강화배상책임(1사고 2억원내) ④강화치료요양(200만원내) ⑤신설위협대처 서비스(20월내) 등 -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인원 및 건수 3배 이상 확대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교원 개인이 민원에 응대 악성민원 대응체계 미흡	→ - 기관 단위의 민원대응체계 구축 - 안전한 민원응대여건 조성 ※ 통화녹음 전하기,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민원상담실 지정·마련	→ - < 전국 구축·설치 비율 > -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98.9% -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100% - 통화녹음 전하기 95.4% - 통화연결음 88.6% - 민원상담실 89.1%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전국 공통의 신고, 상담 시스템 부재	→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로 사안 신고, 심리·법률 상담 연계 등 원스톱 지원	→ - 높은 상담 만족도 “정말 힘들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사례1)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중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팔을 잡았고 이에 '신체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함

교육청→ 수사기관	경찰 수사	검사 결정
→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출	→ 교육감 의견 참고하여 수사 후 '혐의없음' 송치	→ 교육감 의견 참고하여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 (사례2) 담배 피우는 학생 대상 생활지도를 한 교사를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

교육청→ 수사기관	경찰 수사	검사 결정
→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출	→ 교육감 의견 참고하여 수사 후 '혐의없음' 송치	→ 교육감 의견 참고하여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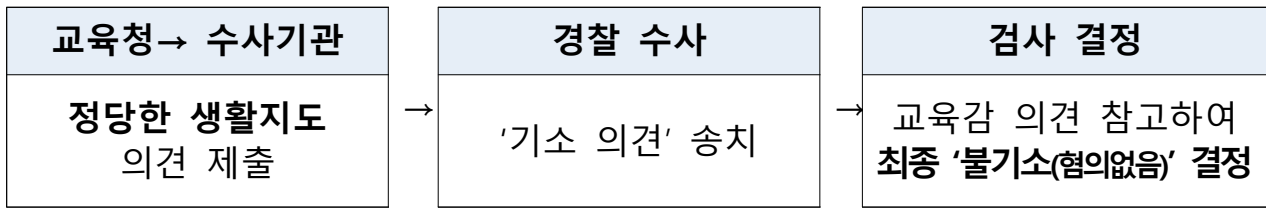
- (사례3)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의 지도 및 사안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를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

교육청→ 수사기관	경찰 수사	검사 결정
→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출	→ 교육감 의견 참고하여 수사 후 '혐의없음' 송치	→ 교육감 의견 참고하여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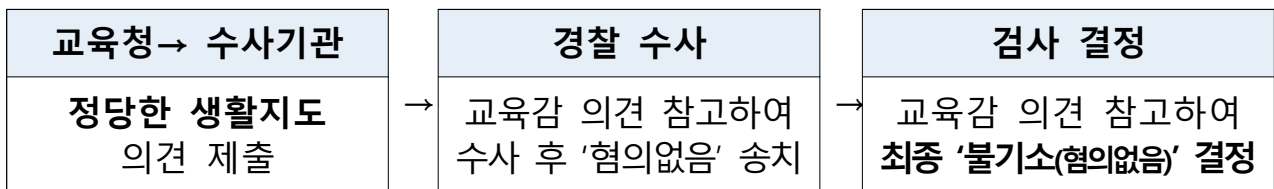
- (사례4) 수업 중 태블릿으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한 교사를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

교육청→ 수사기관	경찰 수사	검사 결정
→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출	→ 교육감 의견 참고하여 수사 후 '혐의없음' 송치	→ 교육감 의견 참고하여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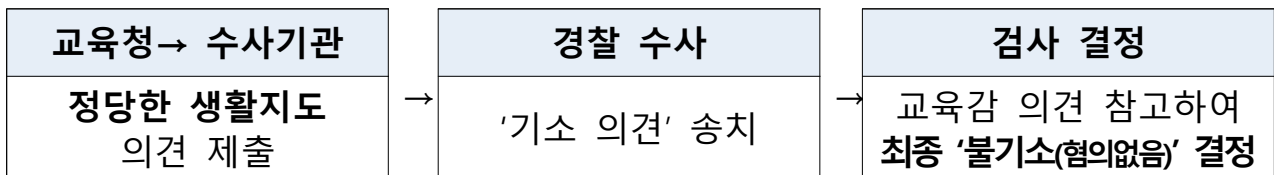
- (사례5) 독립된 공간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의 어깨를 쳤고 위협적으로 학생을 지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학부모가 교사를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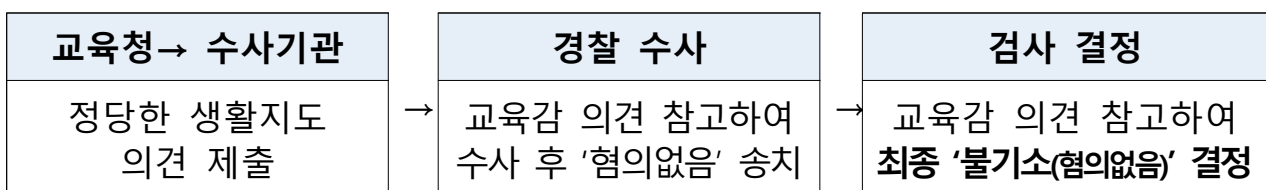
- (사례6) 교사가 엎드려 있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학생을 일으켜 세우자 학부모가 교사를 '신체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



- (사례7) 교사가 학생을 교실과 복도 등에서 꾸짖었고, 이에 학부모가 교사를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



- (사례8)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물건을 던졌고,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학부모가 교사를 '정서적 학대'로 신고





2024년 새롭게 달라진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교권보호 5법 및 교권회복 후속 정책 안내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로 신고·상담 가능 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 상담, 지원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 피해교원 희망 시, 소속학교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 신고 접수 지원
-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매뉴얼 등 공통 제도 안내
- 피해교원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등과 연계 지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시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적위해제 처분 금지

●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조사 후
교육활동 확인서 작성

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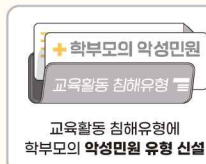
7일 이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의견제출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조사·수사기관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목적에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행위 조치(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선생님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대응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 학교별 '민원대응팀', 교육지원청별 '통합민원팀' 구성·운영
- 학교별 민원상담실 지정·마련
- 녹음전화기, 교육활동 보호 통화 연결을 설정 지원

민원대응팀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가능

- 교직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교직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 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교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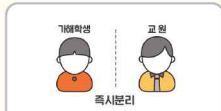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촉소·은폐 금지(위반 시 징계 조치)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피해교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방법 마련·운영



특별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를
출석정지 조치 이상으로 확대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회피할
때에는 지역교육보호위원회에서
교육장에게 가중 조치 요청 가능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때, 학생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할 의무 부과

교원배상책임보험 활성화로 선생님의 교육활동 두렵게 보호합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활성화

교육청 → 교원배상책임보험 위탁 → 학교안전공제회 → 인정적 지원 → 선생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최소 보장범위

신설 분쟁 조정	강화 민형사 소송지원 (심급별 660만원 등)	강화 배상책임 (1사고 2억원내)
강화 치료요양 (200만원내)	신설 위험 대처 서비스 (20만원내)	

※ 시도별 구체적인 보장범위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참고

선생님의 마음건강을 쫄쫄히 살피겠습니다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문 상담 지원
정신건강 교원지원단

심층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마을안심버스

상담이 필요한 교사가 다수 있는 학교 중
희망 학교에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등 제공



※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 상담 매뉴얼 개발 중(~'24.10.)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3주체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회복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